

# 해외입기공 감면대상 제외비용 물품 취급 수수료 등 거래제반비용의 FTA 활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김덕현 연구원 국제일자리정보원

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거나, 임기공물품이

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음으로써 해외입기공품에 대

한 감면보다 더 큰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임기공물품이 예내선으로 인정받을 경우 수출

하는 경우와 둘째, 제조·기공 및 수리를 위하여

수출된 물품으로서 제조·기공 및 수리 후 수입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는 물론 임기공로와 양복

운임·보험료에 대한 세액 역시 면제받을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때, 해외입기공물품이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의 두 가지로 첫째, 원재료 또는 부분 물품을 수출하여 제85류, 제90류 또는 제9006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제조·기공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둘째, 제조·기공 및 수리를 위하여 수출된 물품으로서 제조·기공 및 수리 후 수입된 물품과 HS 10단위가 일치하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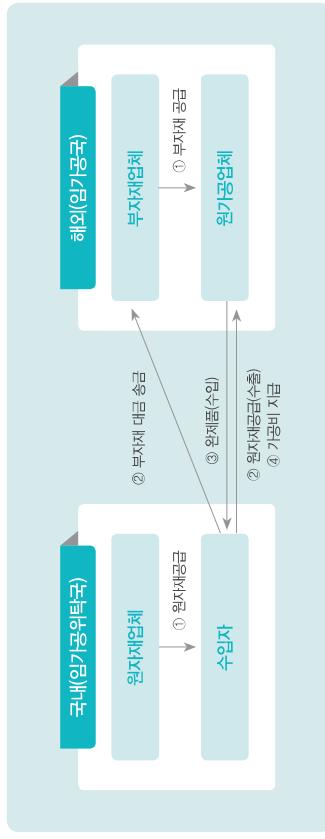
단, 해외입기공물품 등의 감면 범위는 수출된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해외입기공을 위해 발생하는 임기공료와 양복 운임 및 보험료는 해당 원재료와는 별개로 관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즉, 전체 재수입 물품에 대한 100% 감면의 의미는 아니며, 관세법 101조의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해당 원재료에 대하여만 감면을 해 주는 제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임기공로, 물품 취급 수수료, 양복운임 등 거래제반비용까지 세액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FTA를 활용해보도록 하자. 만약 해외입기공업체(수탁기공업체)가 우리나라에 규정에 따라 국내 업체가 외국의 임기공업체에 원재료 또는 부문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원재료)으로 제조하거나 기공한 후 수입하는 때에 수출 원재료에 해당하는 관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해외입기공품의 FTA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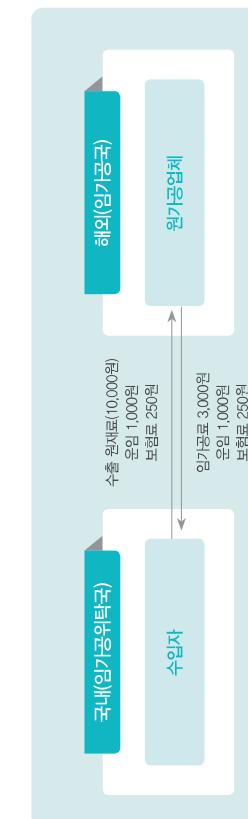
먼저 관세의 감면이란, 수입물품 또는 수입자에게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세를 감면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넘부여해야 하는 관세를 줄여주거나, 이에 대체해주는 제도들을 통하여 관세의 감면제도라 한다.

두 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입기공 물품 등 감면		FTA 특혜세율
적용 대상 물품	제85류, 제90류 또는 제9006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기공한 후 수입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HS10단위가 일치하는 물품	제한 없음
특혜 범위	수출된 원재료의 기준에 대해서만 100% 면제	체불 스페셜에 따라 0%~100%
제출 서류	임기공계약서, 수출원자료와 수입물품 HS 10단위가 일치함을 입증하는 자료 등	(EU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서)
적용 시점	수입신고 수리 전	수입신고 수리 전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간 소급 가능)
적용 범위(국?)	어느 국가나 적용 가능	FTA 체결국에 한정



국내 수입 물품과세기준은 500원이며, 원자재로 700원이다. 원자재로 700원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 원자재로 700원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겠지만, 제품 A가 단계적 철폐 대상 품목으로 수입신고 당시 FTA 특혜 세율이 3%인 경우에는 수입물품가격 15,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465원의 관세를 납부하게 된다. 반면 해외임기공급세를 선택할 경우 25원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임기공료 등에 대한 관세 440원만 납부하면 된다.



- ❶ 수입물품의 과세기준은 15,500원이 된다.  
(수출 원자료 10,000원+임기공료 3,000원 + 보험료 2,000원)

- ❷ FTA를 활용하는 경우 수입물품과세기준 100%에 대해 관세 0%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협정별·품목별 관세율 상이)

- 단,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경쟁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이를 입증할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❸ 해외임기공물품에 대한 감세면 적용 받는 경우 5,500원에 대한 관세 8%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물품 과세기준의 100%가 아닌 (조건 충족한수출 원자료 700원에 대한 관세의 감면이므로, 수출 원자료를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5,500원(임기공료 3,000원 + 보험료 2,000원에 대하여서는 관세 8%(44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 ❹ 단계적 철폐 대상 품목에 대해 FTA와 해외임기공물품에 대한 감세 혜택을 동시에 적용 받는 경우  
해당 원자료는 100% 관세 감면되며, 임기공비 및 운임 등은 FTA 특혜 관세율을 적용 받는다.  
단계적 철폐 대상 품목 AFTA 특혜세율 3%의 경우 임기공료 및 운임 등에 대한 비용 5,500원에 3%의 특혜세율을 적용 받아 165원을 납부한다.

이때, 제품 A가 한-ASEAN FTA를 활용 100% 특혜세율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면 당연히 FTA를 활용한 특혜세율을 적용받겠지만, 제품 A가 단계적 철폐 대상 품목으로 수입신고 당시 FTA 특혜 세율이 3%인 경우에는 수입물품가격 15,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465원의 관세를 납부하게 된다. 반면 해외임기공급세를 선택할 경우 25원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임기공료 등에 대한 관세 44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때 관세 440원에 대한 청감이 다시 한번 협약, 역시 FTA의 활용이다. 수입신고 당시에 임기공 수입 인보이스에 원자료와 임기공비 등을 기입하여 유리한 혜택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겠다.

###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기공물품 등의 감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 원자료 또는 부문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 기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자료에 대한 관세 등 흐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흐름을 받은 경우
    - 보세기공 또는 정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